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여성가족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'24.3.26. 공포, '24. 9.27. 시행)됨에 따라,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을 확대(3년→5년)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(안 제6조제4항)

나.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진단 실시 및 결과통보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및 민감정보 처리 근거 마련(안 제9조의2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4항 중 “3년으”를 “5년 이내”로 한다.

제9조의2의 제목 “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”를 “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여성가족부장관(제9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을)”을 “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(법 제11조의2, 제12조, 제1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”로, “포함한다)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”을 “포함한다)”로, “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”를 “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,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법 제11조의2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, 결과통보 및 치료 등에 관한 업무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등) ① ~ ③ (생 략) ④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<u>3년</u> <u>으로</u> 한다. ⑤ (생 략)	제6조(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<u>5년</u> <u>이내</u> ---. ⑤ (현행과 같음)
제9조의2(<u>고유식별정보의 처리</u>) <u>여성가족부장관(제9조에 따라</u> <u>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</u> <u>받은 자를 포함한다) 또는 지방</u> <u>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</u> <u>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</u> <u>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</u> <u>행령」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</u> <u>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</u> <u>리할 수 있다.</u>	제9조의2(<u>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</u> <u>보의 처리</u>) <u>여성가족부장관 및</u> <u>지방자치단체의 장(법 제11조의</u> <u>2, 제12조, 제13조에 따라 여성</u> <u>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</u> <u>장의 업무를 --- 포함한다)---</u> <u>----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</u> <u>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,</u> <u>같은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</u> <u>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</u> <u>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</u> <u>인등록번호---</u> . 1. <u>법 제11조의2에 따른 건강진</u> <u>단의 실시, 결과통보 및 치료</u> <u>등에 관한 업무</u> 2. 3. (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)
<신 설> 1. 2. (생 략)	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	
연 락 처	(02) 2100 - 6312